인공신장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지침(초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지침 5판 (질병관리본부, '20.2.7 시행)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지침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

2020년 2월 6일

1. 대상

혈액투석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

2. 목적

1) 유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주 3회 외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제약이 따르고

2) 면역력이 저하된 투석 환자들은 밀접한 공간에서의 투석을 시행해야 하므로 감염병 확산이 용이할 수 있어

→ 국내에서도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파를 예방하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침을 활용하고자 함

3. 인공신장실 준비 사항

1) 인공신장실 내 의료진 및 환자, 보호자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2) 원내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인공신장실 입구에 비치한다.

3) 인공신장실 근무 의료진 및 환자, 보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위생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4) 가급적 비말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공신장실 환경을 준비한다.
   *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침대 간격을 유지

5) 대기실에서의 환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실을 폐쇄하고, 철저한 예약제를 시행하고 시간을 준수하도록 환자 교육을 시행한다.

6) 인공신장실에 들어오기 전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입실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미리 반드시 알리도록 안내한다.
   * 유증상자가 인공신장실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7) 체온이 37.5℃ 미만*이고 호흡기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실한다.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상체온 이상인 경우도 발열로 간주할 수 있음

8)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나 방문객을 통제하여 이차감염을 예방한다.

4.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방법

1)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 또는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한 후 향후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2)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과 협의하여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이동 시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확보한다.

3)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이송수단(보건소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119구급차 등)을 결정하고 이송 조치한다.
   * 의사 또는 확진환자는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

4) 만일 격리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일 경우 자체 격리치료 실시한다.
   * 음압이 유지되는 격리병실로 투석장비를 이동하여 혈액투석을 시행

5) 이송 이후 격리공간은 소독을 시행하고,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폐쇄한다.

5. 접촉자 발생시 대응 방법

1) 확진환자 혹은 의사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무증상자의 경우, 매일 체온을 측정하여 37.5℃ 미만이고 호흡기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격리실에서 투석** 또는 코호트 격리 투석을 시행하거나,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코호트 격리 투석이란 다른 환자의 투석치료가 끝난 뒤 별도의 시간에 별도의 공간에서 시행하는 투석치료를 의미함

2) 인공신장실 방문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관할 보건소 또는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연락하여 신고한다.

3) 인공신장실 내부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장갑 등을 착용한다.
   * 감염예방 표준주의 준수

※ 참고사항

· 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준수

· 의료감염관리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관리」준수

〖붙임〗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및 신고대상(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5판 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개정시 내용 변경

□ **신고 대상**

1.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
2.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